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1324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2021. 11. 23.

판결 선고2021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E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8. 1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. 8. 17. 접수 제24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3. 16. E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(이하 '이 사건 대출'이라 한다)을 해 주었다.

2017. 3. 16.	30,000,000원	F조합 MOR + 연 3.76%	최고 연 15%	2020. 3. 16.
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

나. E은 2017. 8. 11.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을 매도했고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. 8. 17. 접수 제2492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다. 원고는 2021. 2. 17. E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2021. 7. 19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가소394호로 "E은 원고에게 32,622,331원 및 그중 3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1. 23.부터 갚는 날까지 연 8.31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"라는 판결을 받았으며, 위 판결은 2021. 8. 5.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'G은 고령에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E을 시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했고, G이 위 대출금을 사용했다. 따라서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'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(대법원 2003. 7. 11.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). 살피건대,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

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수익자인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

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든 증거, 갑 제7, 8호증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E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.

적극재산
1
합계
소극재산
1
합계

3) 앞서 인정한 사실,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, 피고 E이 딸인 피고 C에게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피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이랑

별지

1)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.